

의안번호	2221204
의 퇴 인	장철민의원
회 답 일	2026. 10. 2.
추 계 번호	26B40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안전점검등의 실시) 신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에서 조사·측정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검등이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안전점검 중 시설물의 종류·규모·안전등급, 점검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의무규정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 사람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의2(안전점검등의 실시)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일정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 실시 현황: 2025년도
(단위: 회)

구분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합 계
	대행	자체수행	대행	자체수행	대행	자체수행	대행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5	—	59,889	36,947	11,191	442	1,035	109,508
지방 자치단체	21	2	91,250	122,526	32,439	490	1,127	247,855
합 계	26	2	151,139	159,473	43,630	932	2,162	357,363

주: '26. 6. 30. 기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건물 기준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안전점검등을 위해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에서 조사·측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정기안전점검 중 시설물의 종류·규모·안전등급, 점검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 1조 구성의 예외로 하고 있음

1)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현행법령²⁾은 안전점검등 실시 시 수행 기술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책임기술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필요시 참여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측정·시험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기술인력의 인원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점검등 실시 대상 시설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현장 조사·측정·시험의 실시 여부·횟수 및 참여인력 수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등의 자료가 부재하며, ‘시설물의 종류·규모·안전등급, 점검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등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안전점검등 시설물안전관리 체계

- 2)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안전점검등 시설물안전관리 체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대상 시설	안전 점검·진단	안전관리 체계	관리주체 후속조치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안전등급체계 A(양호) ~ E(불량) ◆ 중대결함(구조안전)	◆ 보수보강 ◆ 긴급안전조치

□ (**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 및 시설물 효용 증진으로 공중 안전 확보

□ (**대상 시설**) 교량·터널·댐·대형건축물 등 15개 유형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규모·중요도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구분

* (**시설물 현황**) 총 18.2만 개소('25.9): (**제1종**) 1.3만, (**제2종**) 11.2만, (**제3종**) 5.7만

** 제1·2·3종은 시설물의 규모·중요도에 따라 구분 (예 : <도로 교량> (**제1종**) 연장 500m 이상, (**제2종**) 100m 이상, (**제3종**) 20m 이상 100m 이하

□ (**안전점검·진단**) 시설물의 종별·안전등급에 따라 실시주기를 정하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順으로 점검 고도화

* (**정기안전점검**) 연 2~3회(면밀한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1회/1~4년(간단한 장비 사용), (**정밀안전진단**) 1회/4~6년(구조안전성평가 실시)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점검** 실시(법제13조제1항)

- (정기·정밀)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법 제2조제5호)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법 제2조제6호)

구분		정기안전점검 (1·2·3종)	정밀안전점검(1·2종·3종(D-E))		정밀안전진단 (1종·2종(D-E) 노후 2·3종(C·D-E))
			시설물	건축물	
안전 등급	A	반기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2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연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조사/시험		면밀한 육안점검	간단한 장비 사용 (ex. 육안검사 장비, 초음파측정기 등)		구조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최초 1회)

* 관리주체는 직접 혹은 대행(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 점검 가능(단, 정밀진단은 직접 수행 불가)